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계획 변경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03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5203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사업계획 변경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42조)	2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221520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Ⅲ. 검토의견

1. 사업계획 변경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42조)

개정안은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4조의2(시정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u>
제40조(벌칙) ① (생략)	제4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u>	4. <u>제3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① (생략)	제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1의2. (생 략)

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

-----.

1. 제25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2. · 2의2. (현행 제1호 및 제1호의2와 같음)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 검토의견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¹⁾는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제로, 2026년 1월 기준 광역BRT²⁾ 5개(119km), 도시BRT 25개(224km)를 운영 중에 있음³⁾.

BRT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⁴⁾, 전국 BRT 운송사업 면허는 총 7개, BRT 운송사업자는 인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대전비알티 3개소임(2026.1. 기준).

< BRT 운송사업면허 현황>

구분	운송사업자	BRT 면허(노선)
인천	인천교통공사(공기업)	7700
세종	세종도시교통공사(공기업)	B0, B2, B4, B5, B6
대전	대전비알티(민간기업)	B1

*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버스도 BRT 전용주행로 이용 가능

자료 : 국토교통부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2) 광역BRT는 두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BRT, 도시BRT는 단일도시 내부 BRT를 말함.
- 3)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4) 제정 전 구축한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BRT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 BRT전용주행로 - 버스전용차로 차이점 참고 참조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로부터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 제25조제1항⁵⁾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⁶⁾.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로서 인가 없이 행해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 신고는 사인이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통지하는 행위로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인허가 제도 중 규제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법적 성질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인가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나 신고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⁷⁾.

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한편, 행정벌은 처벌의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데, 행정형벌은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의무이행확보 방법이 없을 때 최종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제재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함.

그럼에도 침해법익이 사소한 범죄행위나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도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위법상태의 제거를 명하면 사업자에게 시정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시정을 명할 때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⁸⁾.

7)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8)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은 영업자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률상 기준을 미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2024.5. 국회사무처 법제실), p.319.]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⁹⁾에서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하고, 같은 법 제64조제3항제3호¹⁰⁾에서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¹¹⁾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즉각적인 형벌 부과는 기업 활동 및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법 준수 효과와 경제활동 위축 방지를 위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 시정명령을

9)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0) 「고등교육법」

제6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1)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통해 신속한 문제 해소 등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발적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제도적 전환 필요

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고 위반 사항은 공익 침해나 안전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신고 누락이나 경미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형벌 부과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위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전환 등 차등 제재 방안에 공감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1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중 간선급행버스법 내용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1 국토교통부

1	간선급행버스법 (§40-②-4)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천만	(1) 신고사항(경미한 위반) 형벌폐지 → 과태료 전환 (2) 인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2	여객자동차법 (§91-5)	부정한 금품수수 등 불법 자동차대여사업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3	여객자동차법 (§92-3)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1천만	(1) 신고사항(경미한 위반) 형벌폐지 → 과태료 전환 (2) 인가·등록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4	여객자동차법 (§92-13)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5	여객자동차법 (§92-14)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6	여객자동차법 (§92-15)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7	자동차관리법 (§81-19)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경우	1년	1천만	경미한 튜닝 미승인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원상복구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8	주차장법 (§29-①-1)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9	주차장법 (§29-①-2)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10	주차장법 (§29-①-3)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11	주차장법 (§29-①-4)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 BRT 개요

-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 통행시간 단축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 구축 추진

□ 추진 경위

- '05.01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06.03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 광역BRT 재정지원 근거 마련(50%)
- '14.04 : BRT 특별법 제정
 - * 도시BRT 재정지원 근거 마련(수도권 25% / 비수도권 50%)
- '18.11 : 제1차 BRT 종합계획('18-'27) 수립
- '21.11 : 제1차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수립

□ 사업 현황

- **(BRT 사업)** BRT는 전용차로, 우선통행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지자체에서 구축사업 추진 시 국비 지원
 - * 사업근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법」, 「광역교통법」, 및 제1차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 ** 국고지원 : 국고 50%(광역BRT 및 비수도권 도시BRT), 국고 25%(수도권 도시BRT)
 - ※ (광역BRT) 두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BRT, (도시BRT) 단일도시 내부 BRT
 - (구성) 전용주행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
- **(운영현황)** 광역BRT 5개(119km), 도심BRT 25개(224km) 운영 中
 - *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BRT법('14) 제정 전 구축한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은 대중교통법에 따른 BRT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현황 포함)

※ BRT전용주행로 - 버스전용차로 차이점

구분	BRT 전용주행로	버스전용차로
근거법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고시유무	- 법 제18조에 따라 전용주행로 고시(시도지사)	-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 (시장등과 경찰청장)
운영방식	- 24시간 전일제 - 중앙차로 형태	- 전일제 / 시간제 / 요일제 등 - 중앙차로 / 가로변차로 형태
운행차량	- BRT면허를 받은 차량 - 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등	- (고속도로) 9인승 이상 승용차 등 - (그 외)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전세버스 등
차로분리	-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두어 일반차로와 물리적으로 분리	- 파란색 차선 도색을 통해 일반차로와 시각적 분리
단속 등	- 도로교통법 준용 (버스전용차로와 동일)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제143조, 제156조 제1호, 제160조제3항, 제161조 등 전용차로의 통행제한, 단속, 벌칙 규정

* ‘BRT’는 여러 체계시설을 갖춘 ‘교통체계’로서, ‘버스전용차로’와는 다른 개념. 버스전용차로와 BRT의 필수 체계시설 중 하나인 ‘전용주행로’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법적 근거와 통행 가능한 차량, 운영형태 등이 상이한 별개의 시설